

1기 로스쿨 졸업자 취업, 가닥 잡아가나

로클릭 100명 · 검사 42명 · 변호사 등록은 353명, 변협연수는 350명대 각 학교 취업률 공개는 꺼려 ...취업률 자체가 의미없다 주장도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실무연수를 수강하고 있다

대한변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 연수는 날이 갈수록 수강인원이 줄어들고 있다. 410여 명으로 출발한 연수는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19일 현재 35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같은 현상은 로스쿨 1기 졸업자들의 구직활동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4월 19일 현재 대한변협에 변호사등록을 한 로스쿨 졸업자는 353명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451명으로 로클릭으로 100명, 검사로 42명이 임용됐다.

단순계산으로는 1000명이 조금 못되는 수가 연수를 받고 있어야 하는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협을 제외한 연수기관에서 연수를 받고

있거나 변호사 등록 없이 취업해 일하는 수가 상당수라는 방증이다. 개인변호사 사무실에서 실무수습을 하고 있는 1기 졸업자는 “기업체에 취직한 경우는 지금 굳이 변호사등록을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경우이고, 변협 연수를 받는 사람들 중에도 개인사무소에서 수습을 받으면서 연수받는 경우도 있다”며 “중소형 로펌이나 개인사무소 취업의 경우는 등록도 연수도 안 받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또 한 1기 졸업자는 “기대수준을 많이 낮춘다면 취업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대다수가 처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의 실무연수에는 전국 25

개 로스쿨의 졸업자가 골고루 분포한 상황이며, 취업률의 경우 각 학교들이 극력 밝히기를 꺼려하는 가운데 서울대가 95%,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가 70% 정도 선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정확한 수치는 법학전문대학원평가협회에 취업률을 보고해야 하는 8월이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고대 취업률 70%선
서울대는 95%로 추산

현재는 실무연수기간을 채우기 위해 무임으로 취업한 경우도 많아 취업률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변협실무연수를 받는 것이 ‘미취업’이라는 딱지를 다는 것이라고 여겨 구직활동을 하면서도 연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일 것이라 추측이다.

1기 로스쿨의 취업상황보다는 낫겠지만 올봄에 수료한 사법연수원 41기들도 극심한 취업경쟁의 피해를 입고 있다.

우선 지난해 40기의 경우 90명이 검사로 임용됐지만 41기부터는 갑자기 62명으로 줄어들었다. 검사임용을 기다리다 대형법무법인 취업기회조차 놓쳐버린 41기의 불만을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40기 때만 해도 50%를 넘었던 2월 취업률이 40%대로 떨어졌다는 소문, 6급으로 채용하는 국가기관들의 공고가 41기를 한없이 우울하게 만들었다.

41기 4월말 상당수 미취업
법조일원화 여파 42기도 전쟁

4월 현재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한 41기는 모두 540명으로, 판사 86명 검사 62명을 제외하면 882명이 변호사 등록을 해야 한다. 예년이면 거의 대부분이 취업을 하고 변호사등록을 해야 할 시점에도 등록률이 61.2%에 불과한 것이다.

변호사등록을 했다고 해서 취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

다. 일단 등록부터 해두는 경우도 있어서다. 이들은 ‘법조일원화’로 인해 곧바로 판사로 갈 수 없어 성적우수자가 대거 변호사개업을 해야 하는 42기와 함께 내년 취업전쟁을 기약하고 있다.

41기 한 변호사는 “스무군데 정도에 면접을 보고 모그룹 사내변호사로 채용됐다”며 “가장 취업이 힘든 경우는 결혼적령기나 결혼한 직후의 여성들로, 반에서도 그런 분들은 거의 다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변호사들은 예전에 법대 졸업자들이 하던 일을 현재 변호사가 하는 상황이 됐다며 개탄스러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는 합격률을 높여야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예비시험제도와 사법연수제도 적극지지를 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박신애 편집장 rawool32@koreanbar.or.kr】

다음 호 쉽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서초동 법조타운

‘차가운’ 법조인들이 쓰는 ‘따뜻한’ 사람 이야기

대한변호사협회 휴먼 감성 문학지 The WAY [더 웨이]



- 인물탐구
‘한국의 장자방’ 윤여준 / 염상의
- 테마코너 · 첫사랑
첫사랑 그 애 / 최종갑
첫사랑은 아름다운 것 / 유재복
유치원생의 첫사랑 일기 / 정준길

- 소설
국가보안법 위반죄 / 유중원
- 에세이
나는 변호사다 / 백현석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 02-2087-7751
구독료 : 1년 12,000원(납권 3,000원)

◎ 제49회 법의 날 축하 ◎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신영무

존경하는 양승태 대법원장님,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님, 권재진 법무부장관님, 그리고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무궁화장을 받으신 김평우 전 대한변협 협회장님을 비롯해서 수상자 여러분께 깊은 축하와 존경을 보냅니다.

1964년 제1회 법의 날 우리 법조인들이 '법의 지배'를 선언한 이후 오늘은 마흔 아홉 번째 맞는 법의 날입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그늘에서 많은 법조인들이 인권과 정의를 옹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재야에서는 몸을 던지는 투쟁으로, 재조에서는 소수의견으로 또는 사임으로까지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위해 싸운 선배 법조인들의 헌신과 공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1960~70년대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산업화가 시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치가 유린되기도 하고 발전이 지체된 적도 있었습니다. 80년대 이후 민주화를 위한 투쟁과정에서 목적이 앞선 나머지 적법절차가 훼손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적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 다소간 흠이 있더라도 참으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국민은 질 높은 삶을 추구하는 선진화 시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의료, 복지의 모든 기본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 앞에서의 평등은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조인은 어떤 길을 가야할까요? 저는 옛 성현들의 이 말이 우리가 가야할 길을 가르킨다고 생각합니다. 천망회회 소이불식(天網恢恢 疎而不失) - 하늘의 그물은 굉장히 넓어서 성글어 보이지만 선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는 일은 조금도 빠뜨리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법조인은 하늘의 일을 대신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물은 어떠한가 하는가 늘 생각하게 됩니다. 크고 넓은 도량으로 국민을 감싸지만 악한 자에는 물 썰 틈 없이 단죄할 줄 아는 그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국민이 법의 그물을 믿을 만하다, 여기게 됩니다.

국민의 예민한 눈길이 지금 이 시각도 우리 법조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이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감정적으로 쉽게 선동된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분노의 이면에는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원인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권위 앞에서 마지못해 승복하고 뒤에서 분노하는 그들의 내면을 심각하게 봐야 할 것입니다.

법조인 중심 논리 반성 필요
우리는 법조인 중심의 '자기논리' 그리고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 법조인은 국민이 어리석

“악한 자 감싸주고 악한 자 단죄하는 天網돼야”

은 질문을 해도 현명한 대답을 해야 할 의무를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국민에게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면이 있었다면 더욱 더 아래로 겸손하게 내려가 국민과 소통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려고 했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에 충실했는지 뼈저리게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법치주의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법치의 선진화는 이 시대의 국정목표라 하겠습니다.

‘법치의 선진화’ 계속 추진
그 길을 위해 우리는 많이 노력해왔습니다.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외부에서 더 우리를 높이 평가하는 모습은 세계변호사협회가 아시아지역 사무소를 서울에 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가 격돌한 지역사무소 유치전에서 아시아 법률 허브 역할은 서울이, 대한민국이 해야 한다고 결정됐고 3월 21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분쟁은 거의 중재로 해결하는 현대의 추세에 발맞추어 중재서비스를 서울에서 제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 지역사회에 기여할 서울국제중재센터 개소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내실을 갖춰가고 이를 외부에서도 인정받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중단 없이 가야하고 그 길을 법조인들이 먼저 가야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와

인권옹호, 민족의 미래를 위해 한걸음 한걸음 걸어가고 있고 또 중단 없이 걸어 나가야만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12개 국가의 언어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결혼이주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종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 통일법제사이버아카데미를 개강, 통일에 대비한 법조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 미흡하지만 현재 100여 명의 변호사가 북한 법제와 현실, 통일 방안 등을 배우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제대로 이해해야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의 법과 제도로 흡수시키기 위한 인적 자원으로 봉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법무부와 함께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을 돕는 ‘법률조력인’으로 활동할 변호사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수사·재판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할 것입니다. 변호사들이 전 방위에서 활약하며 국민들의 사법 접근권 확대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초석이라 믿습니다.

사법부와 검찰, 대한변협이라는 법조의 삼륜이 제 몫을 다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 그야말로 하늘의 그물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법치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뤘다 할 것입니다. 법의 날을 맞아 경청해 주신 내외 귀빈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축하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2. 4. 25.

변호사 25時
-235-
< 꼬인다 꼬여 >
변호사 이영욱

변호사가 없으면 그냥 적당히 넘어갈 일을
의견서를 빠짐 없이, 열심히 써야지!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고 하면 기록 한번 더 본다.
어? 변호사가 있잖아? 이거 뭐가 있는 거 아냐?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나왔을 텐데
판사님과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어련히 잘 봐주시겠지~

아는 변호사가 담당하면 훨씬 더 꼼꼼하게 본다.
혹시 무슨 말 나올지 몰라! 아주 원칙대로 처리해야지!

차별화된 광고!
여기, 「대한변협신문」이 있습니다.
광고문의
2087-7754

新법조시대 개막 “스마트 소송 체제” 돌입

스마트 소송
법률분쟁에 관한 변호사 무료진단 (특허출원)
내 사건이 소송으로 해결 가능할까요?
고객 전용

법률 시장도 스마트 시대의 흐름에 뒤처질 수는 없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대한민국 법률 시장에서

국민도 웃고, 변호사도 웃고, 정부도 함께 :)
이것은 무엇일까요?

“로시컴 법률구조재단”이 무료로 제공합니다.

로스 스마트
소송가능사건만 골라보는 재미에 빠진다
변호사 전용

변호사는 PC나 휴대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소송의뢰”

변호사는 PC나 휴대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건수입”

NAVER 스마트 소송 검색
NAVER 로시 스마트 검색

〈변호사 전용 ‘로스 스마트’ 신청 안내〉
담당자 직통 전화 02-701-7306 으로 전화 주시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사는 법



금태섭 변호사

별 내용도 없는 책을 몇 권 쓰고 보니 가끔 강연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아무래도 법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대학생 혹은 일반인 상대 강연이 대부분이다. 쉽게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그때그때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보면 두 시간쯤은 금방 간다. 강연이 끝나고 나오는 질문에 답변을 하다

듣고 깔깔대다가도 잠깐만 재미가 없으면 그대로 꾸벅꾸벅 준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 끊임없이 강의의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다. 고등학생만 같아도 흥미진진한(?) 사건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중학생들을 상대로는 조금만 잔인한 사건도 얘기하기가 꺼려져서 더 힘들다.

그렇다고 애들이 원래부터 심통 사납거나 강연을 들을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재미있는 대목에서는 신나게 호응도 하고, 끝날 때면 손을 들고 열심히 질문도 한다. 같이 사진을 찍자고 청하는 아이들도 많다. 그러니 강의 도중에 조는 건 순전히 강사가 말을 재미없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 등에 식은 땀이 흐르지 않을 수 있을까.

강연을 다니다보면 경험이 많은 유명 강사들을 가끔 만나게 된다. 그때마다 혹시 중학생들 상대로 재미있게 강연을 하는 비결을 묻는데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어떤 분들은 잠시만 지루하면 여지없이 고개를 떨구는 놈들한테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던 경험을 얘기하면서 멧쩍은 웃음을 짓기도 한

중학생도 웃긴 내 실력이라면

보면 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 때도 있어서 나름 도움이 되고 재미도 있다. 그러나 중학생을 상대로 하는 강연은 정말 힘 든다.

처음 중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게 된 것은 우연에 가까운 일이었다. 수도권 도시의 한 중학교 선생님이 전화를 하셔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를 들려주고 싶는데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에 있는 학교라서 그런지 학부모 중에 변호사를 찾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다. 강연료를 많이 줄 수는 없지만 봉사하는 마음으로 와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좀 해줄 수 없느냐는 것이었다.

아이 가진 부모로서 애들한테 도움이 된다는데 가지 않을 수 없었다. '변호사가 사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강의안도 만들고 아이들이 재미있어할 만한 농담도 준비했다. 그러나 막상 100여명쯤 되는 중학생을 앞에 놓고 2시간 얘기를 해보니 다른 강연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힘이 들었다.

대학생이나 일반인들은 강사의 설명이 조금 지겨울 때에도 예의상 경청을 해준다. 고등학생만 되어도 나름대로의 예의를 지키려는 노력은 한다. 그러나 중학생들은 정말 냉정하기 짝이 없다. 3분 전에 농담을

다. 이구동성으로 가장 어려운 청중은 중학생이라고 들 한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일도 자주 하면 익숙해지는 법. 처음 강연을 청한 중학교 선생님이 눈치 없이 다른 학교 선생님들께 모 변호사는 청하면 불평하지 않고 강연을 한다고 소문을 내는 통에 그 후 중학교에서 수십 번 강연을 했더니 이제는 조금 나아졌다. 아무리 중학생 상대 강연이라도 '동시에 모든 청중이 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때는 없다. 잠깐 꾸벅대는 놈들이 있어도 얼마 후에 또 열심히 들을 것을 알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는다. 때로는 고함을 쳐서 자는 아이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재미있어도 한다. 나름 중학생 강의의 베테랑이 된 것이다.

가끔 법정에 들어가면 내 나름으로는 열심히 변론을 하는데 잘 안 들어주는 (느낌이 드는) 재판부가 있다.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그래도 처음 중학생 상대 강연을 할 때를 떠올리면 마음이 편해진다. '중학생도 웃겼는데, 조금만 요령껏 변론을 하면 저 부장님도 귀 기울이게 할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한다. 이래저래 취미 비슷하게 시작한 중학생 강연은 강사에게도 큰 도움을 준다. 역시 언제나 가르치면서 배운다.

kts@lawkh.com

사설

취업, 문제는 짬이다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451명이 발표되기에 앞서 1030명의 사법연수원 41기가 수료하고 사회에 나왔다.

우리 역사상 유례없는 법조인수의 배출이었던 만큼 우려도 컸다. 그러나 언론의 호들갑보다는 취업을 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이 실시하고 있는 실무연수에 참여한 수가 350명 내외이기 때문이다. 1000명선에 육박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어 연수준비 실무자들을 긴장시키기도 했지만 410명선에서 출발해 하루가 다르게 연수 참여자가 줄어 들고 있다.

또 대학들, 소위 취직이 잘 된다고 소문이 난 곳은 거의 80%에 육박하는 취업률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취업에서는 양 못지않게 질이 중요하다. 법조 선배들이 걱정해야 하는 것도 일자리의 개수보다는 질이고 법률전문가로서 합당한 대우를 이끌어 내는 것에 있다.

사법연수원 41기가 그토록 6급 채용에 반발했던 것도 그 이유다. 법률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국가가 인정한 이상 그에 맞는 처우를 해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과장급이 자기 의견을 낼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선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존중을 받지 못하면 오래 일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현재 로스쿨 제1기의 경우 취업했다가 도 옮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로스쿨 제1기는 시험을 통과해 합당한 '변호사' 자격을 부여 받고도, 끊임없이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는 고단한 상황이다. 후배들의 진로가 그들 어깨에 걸린 셈이니 말이다. 그러나 '얼마나 잘 하나 두고 보자'는 시선을 견딜 수 있는 새내기들 많지 않다. 법조 전체가 '변호사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동의하고 로스쿨 1기가 좋은 변호사로 훈련될 수 있도록 나서는 것이 선배들에게 과제로 주어졌다.

전체가 살기 위해 후배를 키워야 한다고 본다.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선배가 만들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대한변협신문 ©2012 2000년 3월 27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다06743

대한변호사협회 발행인 신영무 협회장 편집인 엄상익 공보이사 인쇄인 최낙관

대표전화 02) 3476-4000
팩시밀리 02) 3476-2771
기교·기사제보 02) 2087-7752
구독·광고문의 02) 2087-7754
홈페이지 www.koreanbar.or.kr
전자우편 news@koreanbar.or.kr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8-1 변호사회관 5층

Table with 2 columns: Department and Phone Number. Includes sections like 총무, 재무, 인사, etc.

대한변협신문은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공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문분야를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서울회

- 경태현(73. 10. 24. 사시 45회) - 가사법(상속)
고재환(67. 03. 30. 사시 42회) - 채권추심
김은철(68. 07. 10. 사시 44회) - 교통사고
김치현(68. 07. 19. 사시 45회) - 조세법
김형민(56. 08. 09. 사시 29회) - 민사법(건설)
박영규(66. 10. 28. 법무 10회) - 건설
손병기(72. 08. 12. 사시 43회) - 조세법
이동원(74. 08. 18. 사시 50회) - 건설
이상덕(78. 05. 24. 사시 48회) - 민사법(부동

산)

- 이용환(74. 09. 15. 사시 43회) - 의료, 식품·의약
이우만(70. 04. 18. 사시 46회) - 건설
정용진(72. 10. 11. 사시 46회) - 민사법(의료)
추연식(70. 12. 14. 사시 45회) - 교통사고
황치오(67. 12. 05. 사시 31회) - 공정거래

◆ 경기중앙회

- 김철현(51. 11. 16. 사시 25회) - 민사집행

◆ 울산회

변협만평

이우정



변호사법 질의회신

국선전담변호사라도 개업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의로 변호사는 얼마 전 국선전담 변호인에 선발됐다. 한데 법원이 지정해준 사건밖에 못 맡는데다가,

유 등 사건처리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어 대한변협에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비록 그 수행하는 업무가 원칙적으로 국선변호 사건으로 제한되어 공익적 성격이 매우 크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는 국선전담변호사가 법원과 체결한

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소속회를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자신이 속한 지방변호사회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법원의 사건만을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적 준거지인 법률사무소는 소속지방변호사회 관

공익성격 큰 국선전담변호사도 개업상태 유지해야 하나?

법원과 체결한 특별한 약정일 뿐 업무 하려면 개업해야

사무실도 대법원에서 임대를 맡아 처리하고 있으니 변호사법에서 정하는 휴업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됐다. 계약기간은 2년인데 현재 사무실이 있는 지방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소속지방변호사회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였다. 하지만 개업상태를 유지해야 경

특별한 약정의 구속력에서 비롯되는 것일 뿐 국선변호사의 본질은 일반 개업변호사와 다르지 않다”고 봤다.

따라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협회에 등록과 개업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개업상태

할구역 내에 두도록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법원에서 제공하는 법률사무소가 당해 국선전담변호사가 소속한 지방변호사회의 관할구역이 아닌 다른 지방변호사회의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로 소속을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 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 있는 나사장씨는 얼마 전 꿈을 이뤘다. 본인이 일하는 법무법인 근처에 드디어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를 열게 된 것이다.

나사장씨의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이 법률카페 사업은 접어야 한다. 변호사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대한변협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설비인 카페에서 ‘법률상담을 알선한다’는 내용을 간판에 명시하고 내방고객에게 법률상담을 알선하는

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카페에서 법률상담을 알선하는 행위는 영리행위인 카페의 영업을 위한 부수적 활동의 일환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변호사가 이러한 법률상담에

로펌 소속 사무장이 연 무료법률상담 카페 변호사법 위배되나

음료 요금에 법률 서비스 알선 대가 포함돼 있어 안 돼

료를 받고 본인이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 및 일차 상담을 한다. 또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원하는 경우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가 약속된 시간에 이 카페 또는 사무실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기로 했다. 고객은 커피 등 음료 값만 내면 되고, 변호인 선임 등에 대해서는 고객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도록 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이 카페는 변호사법에 위배될까?

경우 이 카페의 서비스요금에는 법률 상담을 알선하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카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 등의 알선이나 알선유인 행위가 유상으로 이루어질 경우는 변호사법 제34조와 제109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카페란 상인의 영업을 위한 물적 시설로서 그 본질은 내방하는 고객들에게 음료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에

참여하는 행위는 비록 그 상담이 무료로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3자의 영리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법률상담에 참여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무공고 규정 제8조’에도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한변협은 이중사무소 개설금지규정,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위반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韓, 유엔 권고 제대로 이행 안돼

변협, 국내 인권상황 검토 UPR 보고서 유엔에 제출

“외국인 근로자는 근무처를 변경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률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사유가 있어도, 변경횟수, 이직을 위한 구직기간 등에 제한이 있다.” “정부가 IC집을 이용한 전자주민등록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 국민에 대한 통제, 감시 우려 등이 문제된다.”

대한변협이 국내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평가한 UPR 보고서 내용이다. 이번 보고서는 유엔이 2008년 첫 심사에서 한국 정부에 권고했던 내용 등을 중심으로 작성됐으며, 4월 20일 유엔에 제출됐다.

UPR(보편적 정례 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은 유엔인권이사회가 2008년 새롭게 선보인 인권보장제도로, 유엔에 소속된 모든 회원국들이 4년에 한번씩 인권상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6년 출범한 유엔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으로 주요 7대 인권조약을 비준했으며, 2008년 첫 UPR 심의 당시 장애인권리협약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분야에 대해 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대한변협의 ‘인권보고서’를 기초로 작성됐으며, 특히 이주 외국인 분야를 이주 노동자, 이주 여성·아동, 난민 등으로 세분화해 평가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다문화 가족지원법’이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과 귀화자만을 지원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가 유엔의 ‘인신매매 의정서’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정서가 정의한 인신매매자를 처벌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특별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아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국가의 한·일청구권협정 부작위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김종철 변협 인권이사는 “대한변협이 한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해 유엔에 제출하는 최초의 보고서로 그 의미가 크다”며 “UPR 메커니즘을 통해 국내 인권 상황 개선에 위 보고서가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제행사 일정 안내

2012 전자상거래와 정보통신 국제회의

기간 : 2012년 5월 4일(금) ~ 5일(토)
장소 : 싱가포르 NUS Guild House (Suntec)
주최 : 싱가포르변호사회-로아시아
주제 : 전자상거래와 정보통신 (eCommerce and Communications)
홈페이지 : lawsociety.org.sg/conference/ICeCC2012/



www.rainbowlaw.or.kr

결혼이민자를 위한
온라인 무료법률상담

온라인법률상담센터

www.rainbowlaw.or.kr은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 다문화 관련 종사자들이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싶을 때 언제든지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전국 100여명의 변호사가 각자의 전문분야별로 상담 해드리며, 소송이 필요한 경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02-3476-6515)의 법률구조로 연결해드립니다.

상담 분야

- 국적법
- 결혼중개업법
- 민사법
- 행정법
- 출입국관리법
- 형사법
- 가사법
- 기타

상담 방법

www.rainbowlaw.or.kr 로 방문

원하는 언어선택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필리핀 타갈로그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태국어, 일본어, 영어, 한국어 중 선택)

공개 상담 혹은 비공개상담으로 상담 글 게재
(이메일이나 핸드폰 번호를 남기면 답변 도착 알림)

변호사 답변 완료



“국민 편익 증진 위한 법 개정 돼야”

대한변협 · 한국행정법학회, 20일 행정소송법 학술대회

대한변협은 (사)한국행정법학회와 공동으로 20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행정소송법 개정방향에 관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신영무 대한변협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행정소송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있어왔다”며 “학계와 실무계가 힘을 합쳐 행정기관 위주가 아닌 국민편의 위주로 행정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첫 발제자인 법무부 국가

송무과 이해은 검사는 ‘국민 편익증진을 위한 행정소송제도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그동안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에서 논의해 온 행정소송법 개정의 핵심 내용을 발표했다.

이 검사는 “현행 행정소송법은 변화된 행정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 권익구제 및 행정소송의 공익적 특성을 실현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어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무부는 기존 개정안 중에서 어느 하나

를 단순히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상태에서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고려해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해룡 한국외대 법전문교수가 ‘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행정소송법 개정방안’, 박해식 변호사가 ‘행정소송법의 실무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김병기 중앙대 법전문교수가 ‘행정소송법 개정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각 발표하고, 학계와 실무계, 경제계, 소비자 단체 등에서 지정 토론에 참여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해식 변호사는 “실무적 관점에서 볼 때 국민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 항고소송의 종류(의무이행소송) 및 대상(규범통제소송 도입)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일본의 사례를 설명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송화 한국행정법학회 회장은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공론화된 논의가 행정소송법 개정의 적극 반영돼 새로운 시대적 필요와 요청에 부응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법조원로회 정기총회 개최

법조원로회(회장 류택형)는 지난 13일 변호사회관에서 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법조원로회는 △법조원로회원의 공증업무 계속을 위한 헌법소원 제기 △사법연수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과 젊은 판·검사,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원로회원 특강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원로법조인 대상 위로금 지급 건 등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법조원로회는 2010년 3월 대한변협 산하 특별위원회로 편입됐으며 현재 75세 이상 정회원 377명을 두고 있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윤희웅 변호사



윤희웅 변호사(사시 31회)가 지난 1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산하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됐다.

방송, 경제, 법률, 회계, 융합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경쟁상황평가위원회는 2년간 방송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윤 변호사는 서울대학 법과대학과 동대학 법학대학원을 졸업

했으며, M&A·금융·증권 및 국제자본시장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대한변협 신임 대변인에 최진녕 변호사 임명



최진녕 변호사(사시 43회)가 지난 16일 대한변협 신임 대변인에 임명됐다.

최 변호사는 서강대 법대를 졸업하고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과 헌법재판소 국선 변호인 등을 맡고 있다.

등정

- 결혼
 - ▷ 권선용 변호사(서울회 · 56년 생) 딸 지혜=4월 28일(토) 대전 월평동 대전교회, 02)3481-0054
 - ▷ 황정란 변호사(서울회 · 70년 생) 본인=4월 28일(토) 서울법원 종합청사 예식장, 02)592-1588
 - ▷ 이현규 변호사(서울회 · 78년 생) 본인=5월 5일(토) 오후 3시 엘타워 5층 매리골드, 02)498-1177
- 부음
 - ▷ 이종현 변호사(대전회 · 71년

- 생) 부친상=4월 7일(토), 010)2517-0097
- ▷ 서창규 변호사(서울회 · 73년 생) 빙부상=4월 11일(수), 02)6223-1000
- ▷ 박천식 변호사(서울회 · 33년 생) 모친상=4월 15일(일), 02)536-7588
- ▷ 박영태 변호사(서울회 · 64년 생) 모친상=4월 16일(월), 02)3273-3331
- ▷ 임순호 변호사(서울회 · 72년 생) 부친상=4월 16일(월), 02)3472-3344
- ▷ 김영애 변호사(서울회 · 78년

- 생) 부친상=4월 16일(월), 02)6003-7345
- ▷ 윤제영 변호사(서울회 · 55년 생) 본인상=4월 17일(화)
- ▷ 이상호 변호사(서울회 · 65년 생) 부친상=4월 18일(수), 02)534-1001
- ▷ 오정환 변호사(서울회 · 66년 생) 모친상=4월 18일(수), 031)710-0506
- ▷ 주창호 변호사(서울회 · 62년 생) 본인상=4월 19일(목)
- ▷ 이석형 변호사(서울회 · 49년 생) 빙모상=4월 20일(금), 02)595-0001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 시행 안내

대한변호사협회는 국제화·전문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변호사들 간 자유경쟁을 통해 전문성을 극대화 하며 법률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 1월부터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문분야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원께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청서(협회 홈페이지 내려받기 가능)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거나 법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내용은 본 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 처리 과정
 - ① 신청 접수(우편·방문)
 - ②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각 분야별 위원 검토
 - ③ 심사결과 상임이사회 상정 및 의결
 - ④ 신청자 결과 통지(등록증 교부·대한변협신문 공시)

◆ 신청 분야(최대 2개 등록 가능)
- 협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참조

◆ 등록 유효기간 : 5년

◆ 등록 신청비 : 1개 분야당 100,000원
※ 협회(계좌번호 : 신한은행 140-000-353899, 예금주 : 대한변호사협회)로 등록신청비를 송금하시는 경우, 입금여부를 협회로 연락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1 변호사회관 5층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우편번호 : 137-885

◆ 연락처
- 전화 02)2087-7721, 팩스 02)3476-4008
- 이메일 jdchang78@koreanbar.or.kr
- 담당자 : 주임 양희창(법제과)

변협 “전자문서 활성화, 악용 사례 부를 수 있어”

상법개정안에 의견서 내 “어려운 法용어 정비에 앞서 명확한 개념 유지도 중요” 강조

대한변협은 이진복 의원과 전현희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서를 보내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진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서도 동의할 수 있도록 했다. 종이문서 사용에 따른 보험계약 불편을 해소하고, 전자문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전자서명의 방식으로 가능할 경우 타인의 공인인증서와 이에 대한 비밀번호를 습득한 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보험계약 체결의 편리함과 전자문서 활성화에 부합하고자하는 개정취지보다는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자 하는 기존 법령의 입법취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또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동법 제520조에 사용된 ‘정돈(停頓)’ ‘실당(失當)’ 등의 용어를 다른 용어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대한변협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개정안은 법령에 사용된 ‘정돈’ ‘실당’이라는 용어는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법학을 전공한 법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찬성하나, ‘정돈’이란 표현은 비록 실생활에서 잘 사용되진 않아도 대체하고자 하는 용어인 ‘마비’와 비교해 볼 때 ‘정돈상태’는 ‘마비상태’에 이를 정도로 그 업무가 정체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반대했다.

또한 ‘도리에 어그러짐’ ‘이치에 어긋남’이라는 뜻의 ‘실당’은 생소한 법률용어가 아니라며, 굳이 이 부분만을 ‘타당성을 잃어’로 고치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회, 진해 등에서 변호사 수련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장준동)는 지난 14일 진해 및 마산합포구 저도 일원에서 총 46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사 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진해군항 문화탐방과 해양드라마 세트장

관람, 저도 비치로드 하이킹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참가한 변호사들은 한껏 만개한 벚꽃의 정취를 만끽했다.

또한 이어 열린 만찬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선량 방사능도 인체에 악영향 줄 수 있어”

16일, ‘원전사고로 본 방사선과 건강’ 강연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16일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주영수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를 초빙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본 방사선과 건강’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최근 우리나라 고리 1호기 사고를 통해 핵 발전의 위험성과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오욱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오염물질이 지구촌 곳곳에 퍼지면서 방사능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일반 국민 또한 일상 환경에서 얼마든지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문제에 대한 접근과 관심이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영수 한림대 의대 교수는 “원자력 기술 전문가들이 일본의 ‘비등경수로’ 보다 한국의 ‘가압경수로’ 방식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내 최고령 고리 1호기를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선량 방사능도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한국을 넘어 동북아 전체가 탈 원전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식품·보건 전담 형사재판부 설치 추진

대법원이 전국 주요 법원에 식품·보건 전담 형사재판부를 설치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고 형사 전담재판부 예시에 ‘식품·보건 전담재판부’를 추가했다.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확산됨에 따라 식품·보건 범죄에 관한 사건 처리 기준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각급법원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남기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과 같이 이미 보건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법원은 식품·보건 전담재판부로 확대 개편하고, 나머지 법원도 식품 가공 공장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식품·보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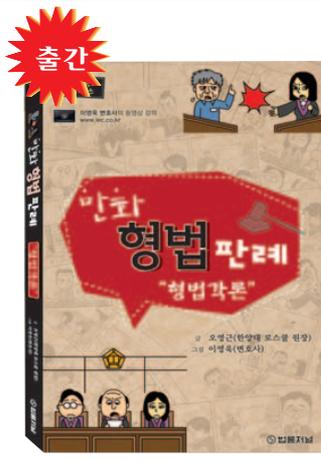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변호사·사진)이 지난 16일 서울 남대문로5가 시티타워에서 개원식을 가졌다.

추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확한 감정과 신속·공정한 조정, 중재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중재원이 환자와 보건의료인을 보듬고 아픔을 덜어줘 국민 모두의 사랑을 받는 참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각오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난 8일 출범한 이래 하루 평균 140여 건을 상담해오고 있다.

형법 중요 판례가 머리에 쏙쏙!!!

〈출간예정만화판례시리즈〉



〈 필수판례 99개〉

〈 필수판례 109개〉

글 : 오영근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그림 : 이영욱(변호사)



이영욱 변호사의 동영상 강의 www.lec.co.kr

저자에게 듣는 책이야기



변호사 개업 가이드

이원철(사시 22회), 백영사

이 책은 로스쿨 졸업생들을 포함해 새로 변호사사업을 개업하려는 이들에게 변호사개업과 법률사무소 운영에 관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발간한 가이드북이다.

개업자금은 얼마나 들며, 사무실은 어디에 낼 것인지, 사무직원은 어떻게 채용하고, 실내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무실을 개설한 뒤에 자신을 광고하고 고객을 확보하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사건을 수임할 때 수입료는 어떻게 정하는지 등 로스쿨이나 사법연수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짚어준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① 변호사업계의 변화, ② 변호사업 시작하기, ③ 법률사무소의 개설, ④ 광고와 선전, ⑤ 고객의 확보와 유지, ⑥ 변호사사무소의 운영, ⑦ 변호사의 보수, ⑧ 재무관리와 세무, ⑨ 직무상 분쟁과 변론과오, ⑩ 변호사윤리와 징계, ⑪ 각종 양식 모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록형 연습 민사법

전병서 중앙대 로스쿨 교수(사시 32회), 법문사

이 책은 충실한 법조인 양성교육을 뒷받침할 민사법 종합 교재의 구상 가운데 하나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업 및 기록형 변호사시험을 위한 교재다.

변호사시험에 실무형 시험문제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사법연수생을 위한 연수과정에서의 자료 이외에는 변호사시험 경향에 대비할 마땅한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일단 신학기를 맞이하여 본 교재를 출간하기로 했다. 양식이나 서식 등 기록 중심의 교재인지라 텍스트 위주의 종전 법서에 비하여 편집, 인쇄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점에 대하여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후 계속해서 내용도 알차고 형식도 세련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직 미완성인 교재이지만, 아쉬운 대로 본 교재가 저자의 '분쟁유형별 민사법'과 함께 새로운 법조인 양성교육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세빈아 오늘은 어떤 법을 만났니

신주영(사시 40회), 토토북

이 책 '세빈아 오늘은 어떤법을 만났니'는 변호사 엄마가 딸에게 들려주는 법과 사회 이야기다.

아이들의 일상생활에서 소재를 찾아 엄마의 목소리로 쉽고 재미있게 법 이야기를 전하고자 했다. 교과서에서 배우는 '법과 사회'를 생활 속의 재미있는 일화를 통해 쉽게 가르쳐주고 싶었다.

이 책을 통해 아이들이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정의와 계약, 인권, 법조인의 역할, 법의 정신 등에 대해서 이해하고, 논리적인 사고력과 공평한 판단력을 키웠으면 한다. 뿐만 아니라 교과서의 단편적인 지식으로는 배울 수 없는 지혜, 말하자면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가치관과 사회를 꿰뚫는 안목까지 얻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부불패

유재원(사시 45회), 한국경제신문사

흔히들 머리가 좋거나 특별한 공부법을 알고 있어야만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가 만난 수

많은 명문대생들은 이런 편견을 과감히 깨뜨린다. 이들은 절대 공부법에 의존하지 않았고, 선행학습에 '올인'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누구나 알고 있을 법한 똑같은 공부법이 전부였지만 평범한 학생들과는 다른 특별한 습관을 통해 자기관리를 해왔고, 이것이 바로 공부의 원동력이었다.

이 책은 이러한 명문대생들의 공통 법칙 7가지를 소개하여, 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이 책을 통해 명문대생들의 충격적인 공부혁명이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이제 남은 것은 명문대생들의 이기는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어 바로 실천하는 것뿐이다.



이슈 돋보기

곽노현 교육감, 어떻게 되나?

1·2심 사실인정은 같고 양형만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대법원서 무죄인정 어려워...헌법소원에 한가닥 희망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실형선고가 났는데도 교육감직을 수행하기로 해 갑론을박이 뜨겁다. 1심과 사실인정은 거의 대동소이한 가운데 양형에 조정이 있었던 항소심 판결결과를 정리했다. 사실인정이 거의 같은 만큼 상고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해졌고 곽 교육감 측은 변호인단이 낸 헌법소원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곽노현, 박명기, 강경선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선고는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에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선고됐다.

◇곽노현의 유죄 부분(2억 원 수수·제공 부분)

재판부는 곽노현이 제공한 2억 원이 선의의 부조로 지급되기에는 너무 큰 액수인 점, 곽노현과 박명기 사이에 경제적 곤궁을 이유로 2억원을 선뜻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후보 사퇴로 곽노현이 후보 단일화라는 정치적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하여, 2억 원과 박명기의 후보 사퇴행위에 대가관계가 있다

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박명기의 거듭된 금전 지급 요구에 곽노현이 응한 점, 박명기가 후보 사퇴로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해 많은 빚을 지게 됐음을 알면서 곽노현은 2억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대가성을 인식하면서 2억 원을 제공·수수하였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해서 원심도 유죄 판단했었다).

◇곽노현의 무죄 부분(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 제공·수수 부분) 위 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출 방식이 서울시 조례에 의하여 '호선'으로 바뀌었고 자문위원회에서 박명기가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은 자문위원들 사이의 자발적인 선출에 의한 것이다. 곽노현이 선출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다(원심도 무죄 판단).

◇곽노현에 대한 양형이유 선거는 민주주의의 토대로, 후보 사퇴를 매개로 금전이 제공·수수되는 것은 유권자의 선거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송고한 교육의 목적을 실천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사후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2억 원은 역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비추어 볼 때 거액에 해당한다.

그러나 박명기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했고, 대학교수로서 사회운동가로서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해왔다. 그래서 결론은 징역 1년 선고(벌금 3000만원 선고한 원심의 형은 경합했다. 다만 곽노현이 현재 법령 해석을 다루고 있고, 법률심인 상고심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박명기에 대한 양형이유

적극적으로 금전 지급을 요구했고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는 거액인 2억 원을 수수한 데다 교육위원을 3선이나 역임한 대학교수가 교육의 연결성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 하지만 후보 사퇴로 인하여 선거 빚을 많이 지게 됐다. 초등학교 교과서를 집필하는 등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이바지했고 이 사건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2억 원 선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과중, 곽노현과 강경선의 형량도 아울러 고려).

◇강경선에 대한 양형

강경선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1심이 피고인 강경선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해 항소 기각(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정).

◇향후 전망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곽 교육감은 당선무효가 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죄에 관해 '제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지만, 오는 7월에 대법관 4명이 교체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1심은 2억 원의 대가성은 인정하면서도 동기를 윤리적 책무감과 정치적 이해관계의 복합적 작용으로 판단, 벌금 상한인 3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2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지급한 것에 비해 벌금형은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이 1, 2심 사실인정을 뒤집기는 어려워 무죄 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곽노현 변호인단은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면서 "법조항이 추상적이며 주관적인 구성요건만을 규정할 뿐 객관적 구성요건표지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내용과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었다.

연재소설

글 : 윤상일 변호사 / 삽화 : 이준섭 교수

렉스 휴마노스 우리가 뽑은 일꾼에 대한 책임

공직선거법위반 ①②③④

“미안합니다, 절차상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관 의견과 변호인의 변론 및 피고인의 최후진술 전체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에 속개된 법정에서는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다.

서둘러 심리를 종결하고 오후 4시에 개정한다는 이정희 재판장의 선언에 따라 나상식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순간 나상식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알았지만 이정희 재판장은 이미 등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나상식은 곧바로 재판부에 절차상의 착오문제를 통보하였는데 사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이정희 재판장도 심리를 서둘러 종결한 자신의 실수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왕 오후 4시에 속행하기로 한 것이니 따로 개정시간을 정하지 않고 오후 4시에 법정이 개정되면 빠진 절차들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다. 이정희 재판장은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소송관계인 모두에게 사과한 다음 재판을 진행했다.

나상식은 어색한 미소를 띠며 사과하는 이정희 재판장의 모습에서 문득 소녀시절의 그녀의 모습을 본 것 같아 속으로 씩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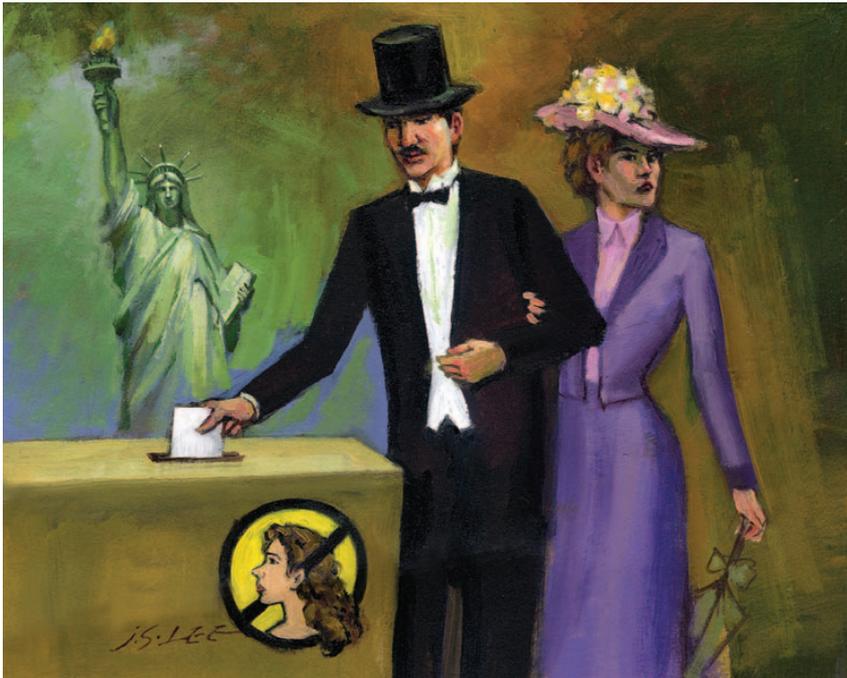
“검찰관, 의견 진술하십시오.”

공정문 검사는 언제나처럼 비대한 몸집을 기우뚱하며 일으켜 천천히 배심원 앞에 섰다. 이윽고 공정문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배심원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그 주권을 행사하는 제도적인 방법이 바로 선거입니다. 그만큼 선거는 민주주의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그러기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분이 이미 보신 것처럼 피고인은 투표장에 난입하여 신성한 주권을 행사하려는 이무상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빼앗아 찢어버리고 이무상을 투표장 밖으로 끌고 나감으로써 폭력으로 선거를 방해한 것입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에서 그 어떤 이유로도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있을 수 없는 또 있어서도 안 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아니, 단순한 범죄행위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마치 이무상이 후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찍으려고 한다는 등 이무상의 주권행사를 비하하고 심지어는 이무상을 투표할 자격조차 없는 망나닌 것처럼 매도함으로써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여 선거에서 누구를 찍으라고 강요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아들이 자유롭게 선택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행위를 방해할 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사 그 아들이 정말 말도 안되는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하였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무상은 이미 군복무까지 마친 대학생으로 당당한 성인으로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투표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한참 모자라 보이는 아들일지 모르나 사회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인 것입니다.

배심원 여러분! 여러분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이거나 앞으로 부모가 되겠지만, 부모라고 하여 자식의 속마음을 다 알 수가 있었습니까? 이무상이 아무 생각없이 끝에서 두 번째를 찍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그저 단순한 주장일 뿐이고 가사 실제로 그렇다한들 이 역시 이무상의 권리요, 선택할 뿐 이를 방해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배심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논고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는 공정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차 있었다. 그 자신감이란 이번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배심원 앞에서 연기하는 데 대한 자신감이라는 것을 나상식은 잘 알고 있었다.

“변호인, 최후 변론하세요.”

이정희 재판장의 말에 나상식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천천히 배심원 앞으로 나갔다. 과연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나상식은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표정을 지으며 공정문 검사가 그랬던 것처럼 한동안 말이 배심원들을 바라다가 천천히 입을 떼었다.

“배심원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나라 정치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 국민이 뽑은 지도자가 잘못하면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해 갈아치우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 정치가 늘 낙제점이고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인인 국민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면 국가를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뽑은 일꾼들이 정치 잘못한다면 그 궁극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생각없는 아들의 투표용지 찢어 찢은 피고인 우리 사회 주인으로서 책임지는 행동 ... 무죄

하겠습니까? 바로 그들을 뽑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닐까요?

배심원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그 일꾼을 뽑을 때 과연 어떤 기준으로 투표해 왔습니까? 과연 그 사람이 그 일을 맡기에 충분히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심사숙고하여 투표해 왔습니까? 아니면, 인정이나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이거나 아니면 떠도는 루머나 남의 말을 듣고 뽑았습니까?

배심원 여러분!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이 바로 선거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권행사는 그 무엇보다 신성한 것이 아닐까요? 그 신성한 주권행사를 연필을 굴려 찍듯이 해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그도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이니 연필을 굴려 찍든, 제비뽑기로 결정하든 주권자의 자유이고 권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배심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권은 그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인류역사에서 수많은 희생을 치른 대가로 정말 힘들게 쟁취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국민들이 선거권을 갖게 된 것은 지극히 최근의 일로 채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근대 민주주의의 발원지

라는 영국에서도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이 인정된 것은 1928년이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친 프랑스혁명 후에도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졌고 아예 여성에게는 선거권이 없었습니다. 1946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선거권이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선진 민주국가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미국에서도 여성과 남성에 대한 동등한 선거권이 주어진 것은 1920년인데 이는 백인의 경우이고 흑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흑인의 참정권이 완전히 보장된 것은 놀랍게도 1966년이 되어서야 실현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948년 헌법을 제정할 때부터 20세 이상의 남녀 모두에게 선거권이 주어졌지요. 어떻게 보면 거저먹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공짜로 얻은 주인자리여서일까요? 우리의 주권행사의 역사는 참으로 부끄럽고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의 정치수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배심원 여러분! 주인은 주인답게 주권행사를 해야만 주인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를 보면 금지선고고를 받은 자나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자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이 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였을까요? 바로 우리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격이 없거나 책임을 질 능력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배심원 여러분! 금지선자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만 아니라면 우리 사회의 주인

으로서 자격이 있을까요? 정말 그런 사람만 아니라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겨도 괜찮은 걸까요? 우리 더 이상 신성한 주권행사를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 방관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 더 이상 주인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맙시다. 배심원 여러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인 행동은 바로 책임 있는 주인의 그것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배심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나상식은 다시 한번 배심원들과 일일이 눈을 한번 맞추면서 변론을 끝냈다.

“피고인, 최후진술 하세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법에 따른 심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저는 옳은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심리를 마치고 기록검토와 배심원 평의를 위해 한 시간 휴정한 후 오후 6시에 속행하겠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검찰의 논고와 변호인 변론을 종합하여 다시 한 번 평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결국 오후 6시에 속행된 법정에서 피고인 이신남에게 내려진 판결은 ‘무죄’였다. 다시 속행된 배심원 평의에서 결론이 달라진 배심원이 한 명 있었는데 결론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했다. <끝>

즐거운 편지



유재원 변호사

이런 시가 있습니다.

“꾸지람과 비방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우며/ 적대감 속에서 자란 아이는 싸움질을 잘하고/ 질투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이는 죄의식을 갖게 되며/ 놀림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부끄러움과 수줍음을 잘 타게 됩니다// 관용 속에 키운 아이는 인내할 줄 알고/ 격려 속에 자란 아이는 자신감과 신뢰심을 갖게 되며/ 칭찬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긍정적인 대우를 받고 자란 아이는 올바름(正義)을 배우며/ 안정감 속에서 자란 아이는 믿음을 갖게 되고/ 인정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을 사랑하고 긍지를 느끼며/ 포용으로 키워진 아이는 세상에서 사랑을 발견하는 법을 배웁니다.” - ‘꾸지람 속에서 자란 아이는’, 도로시 로 놀테(1924~2005) 작

로이어(Lawyer)는 단지 변호사(Attorney, Solicitor)만이 아닌 법률로 교육받은

사람(법조인)을 의미합니다. 법률전문가인 셈이죠. 물론 세상에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많은 법조인들과 더 많은 당사자들을 만나 왔습니다. 저 또한 비법조인들에게 늘 부탁을 받는 입장이었고 그 이야기를 잘 들어서 전달해야 하는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듣는 능력은 나아지지 않았습니. 무심히 끄덕끄덕 하면서 “에이, 법에 대해 뭘 모르시네. 안 되겠어”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았지요. 어떤 경우에는 당사자를 혼내면서 사건을 제가 이끌어 가버리곤 했습니다. 역시나 법정에서 가면 그런 당사자들은 현명하신 판사님, 명철하신 검사님께 꾸지람을 듣곤 했습니다. 꾸지람을

저 부장검사 사건, 벤츠 여검사 사건, 막말판사 사건, ‘부러진 화살’ 사건 등등 일부 이슈가 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전체 법조계에 대한 국민여론은 뜨거웠습니다. 이제 우리 법조계에서 배운 ‘꾸지람 받은 아이들’이 비난을 시작한 것이지요. 물론 법조계는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법조계가 국민에게 꾸지람, 비방, 적대감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것은 단지 직업적인(업무적인) 역할 때문이라고 하곤 했습니다. 당사자주의, 객관주의, 직업적 사명감을 중시하다 보니 폭언이나 모욕, 훈계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비난은 멈추지 않고 사법의 전반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수준까지 왔습

법정에서 혼나야 하는가”라는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렇게 ‘꾸지람 받은’ 국민들이 지금 법조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동료 재소자에게 락스를 먹이는 금자라는 연쇄유괴살인범은 다시금 세상에 나와서 ‘친절’을 실천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새 삶을 살려고 한 금자씨는 여전히 무섭고 짙은 화장을 서슴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그녀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눈을 시뻘겋게 칠하고 다녀?” 금자씨는 “응, 친절해 보이니까”라며 이야기하죠. 사실 마음은 따뜻했죠. 이제부터라도 유괴 피해자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싶은 ‘친절한’ 금자씨이지만 갑자기 사람들에게 ‘친절하다’는 이미지는 어색했던 겁니다.

로이어씨(법조인)는 금자씨와 비슷하게 친절보다는 차가움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지요. 법조인은 ‘치우치지 않음(不偏不黨)’ ‘사건의 공정’ ‘당사자주의’ 등을 내세워 원·피고 혹은 피고인에게 기초적인 법률 조언도 안하고 ‘법률의 부지(不知)’를 닦았습니다. 그렇다면 법조인들도 금자씨처럼 친절하게 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금자씨처럼 처음엔 어색한 행동이 될까봐 당분간 엄숙하고 근엄한 화장(?)으로 가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국민에게 로이어씨의 친절한 마음은 전해질 것입니다. 그 노력은 친절한 금자씨의 위대한 변화만큼이나 가치있겠죠. 이제 새로운 로스쿨 시대의 법조계에는 ‘친절한 로이어씨’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ryulaw2000@yahoo.co.kr

친절한 로이어씨

들은 의뢰인(당사자)은 “무식하다”는 것을 확인했는지 기가 폭 죽어서 그때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에 순응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처럼 저뿐만 아니라 여러 법조인들은 당사자들을 꾸짖고 그 잘못을 지적하곤 했습니다. 그 순간 당사자는 교육수준과 나이·인격을 불문하고 ‘꾸지람을 받은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법률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을(乙)의 위치에 서 있을 뿐이었는데 말이지요.

그런데, 그 많은 당사자들(乙)이 어느새 법조계(甲)를 향해 비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니다. 이제 국민은 꾸지람을 하는 법조인보다는 친절하게 법을 일깨워주며 공정한 대우를 해주는 법률전문가를 원합니다.

관용, 격려, 칭찬, 공정, 안정감, 인정, 포용을 받고 자란 아이는 ‘긍정의 선순환’을 준다고 합니다. 그 반면, 꾸지람, 비방, 적대감, 질투 속에서 자란 아이는 그 공격성을 다시금 부모, 선생님에게 돌릴 수 있지요. 이처럼 이 세상에는 그동안 법정(법조계)에서 꾸지람, 비난, 적대감을 받아 온 국민이 참 많습니다. 그 꾸지람 받은 아이는 “나는 죄인도 아닌데 단지 무식하다는 이유로 매년

로스쿨 통신



이창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학교 특성화 분야에는 어떤 관심이 있나요?”

2년 전,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한 거창한 대답들을 준비해보고 스스로 뿌듯했던 기억이 난다. 이 글을 보는 누구든 아마 한번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볼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한 지방 로스쿨의 원장님께서 변호사시험 이후에 “대형 로펌 등에서 지방대 학생들에게는 기회를 거의 주지 않아서 아쉽다”라고 하신 것을 기사에서 보고, 과연 로스쿨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물론 로펌에서 서울 소재 로스쿨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원 배정 등에서 지방의 로스쿨에 유리하도록 고려한 것은 전국 곳곳에 산재해있는 무변촌을 없애고, 법률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취지

가 아니었던가? 로스쿨 제도를 신설한 것이 대형 로펌 등에 우수인재를 공급하기 위한 것은 아닐진대, 각 로스쿨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검사, 로클럭 임용, 로펌 채용인원 등 숫자놀음을 통해 서로 무의미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학교에 입학하면서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 특정 판례들을 두고 동기들과 토론도 해보고 싶었고, 자원봉사도 하고, 인문학이나 소설을 읽으며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싶기도 했다. 물론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애초에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동기들과 함께 학교시험에 출제될 만한 특정판례

들을 선택하여 암기하기에 급급하고, 학교 강의의 프린트를 읽으며, 자원봉사가 아니라,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실무실습이나 스펙들을 쌓아 나가기에 바쁘다. 지금 학교에서 인문학 책을 읽는 모습을 누군가가 본다면, 틀림없이 학교생활을 포기했다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른다.

학사관리 엄정화와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고정은 이처럼 다양한 부작용을 가져온다. 넓은 시각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의 로스쿨 진입을 결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음을 올해 입시에서도 볼 수 있었다. 앞으로도 학

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를 위하여 법학사들을 실질적으로 우대하는 입시가 계속 될 것이고, 어렵게 관문을 뚫고 로스쿨에 입성한 이들도 학사관리 엄정화의 굴레 속에서 오랜 학습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학사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난다.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내려면, 자신의 경력이나 특성화할 수 있는 분야는 신경 쓸 겨를도 없이 학교공부에만 매달려야 한다.

인권변호사든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든 모두 학점 전쟁의 극복과 변호사시험 합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점경쟁으로 인해 절대평가를 하고 학점을 쉽게 받을

다. 급여수준이 낮고 어려운 곳에 근무하는 것은 최후의 선택이 되어가고 있다.

로스쿨 제도가 출범 이후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많이 재단되고 왜곡되었다. 원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분야에 대한 과목의 수강을 장려하고, 학교에서 공익관련 자원봉사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림으로써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법률전문가로서의 활동영역 확대를 위해서 변호사시험도 핵심적인 이론과 판례를 위주로 하여 깊이 있게 출제하도록 하여 법률 적용능력의 향상과 수험부담의 경감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학사의 파행을 막고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학사관리 엄정화 방안은 폐지되거나 적어도 수정되어야만 한다.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과목들을 학점관리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현실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이쯤에서 스스로의 버킷리스트가 아닌 이 사회의 버킷리스트는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해보자. 실력 있는 법조인의 양성, 소외된 계층에의 지속적인 법률서비스 제공, 인권 분야에서의 활동 제고, 증가하는 법률에 대한 적법성과 합리성에 대한 검토와 비판 등등. 하지만 로스쿨의 현주소는 이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목표를 위한 제도의 개선·발전 방안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만이 법률전문가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빛과 소금으로서 모두에게 신뢰받는 길이 될 것이다.

cptleecm@gmail.com

대한민국의 빛과 소금

수 있는 과목에 학생들이 몰리고, 특성화 관련 과목들은 시험과 관련이 없거나 좋은 학점을 취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거 폐강되고 있다는 사실이 종종 신문에까지 보도가 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은 대부분 무변촌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치열했던 경쟁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그동안의 막대한 학비가 생각났을 수도 있다. 모두가 로클럭, 검사가 되기를 원하고, 급여수준이 높은 로펌에 가는 것을 희망한

Interview

행동하는 예수의 잔영이 비치는 **배 의 철 변호사**

“주말 알바 뛰더라도 공익 변호사로 일할 것”



사법연수원에서 독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공익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생기고 그를 돕겠다고 수많은 연수생과 교수들이 일정액의 기부를 약정했다는 것이다. 출세욕이 가득한 이기적인 엘리트 집단 속에서 이번이 발생한 것이다.

그 중심에 배의철 변호사가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열정에 불타는 에너지 가득한 30대 중반의 청년변호사라고 했다. 성경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효모가 빵 전체를 부풀린다. 배 변호사가 바로 그런 사람 같았다. 나도 그 나이에 변호사를 시작했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늘구멍 같았고 사회의식도 없었다. 어떻게 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까만 궁리했었다. 당시 내가 일하던 서소문 건물의 도로 건너편 명지빌딩에는 조영래 변호사의 사무실이 있었다. 내가 있는 건물 윗층에는 박원순 변호사가 있었다. 그들은 이미 세상을 깊숙이 보고 자신을 태워 빛을 내는 촛불 같은 변호사들이었다. 그리고 3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다. 조영래라는 인물은 변호사 세계의 전설이 되었고 시민운동을 하던 박원순은 서울시장으로 국가적 지도자가 되어 있다.

언론은 배의철 변호사를 제2의 조영래로 점찍고 있었다. 사무실로 찾아온 배 변호사를 만났다. 얼굴에 아직 소년의 밝은 미소가 남아있는 동안(童顔)이었다. 후리후리한 체격에 서글서글한 인상이었다. 그와 마주앉아 얘기를 했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정의에 일찍 눈뜬 사람들에게는 대개 남 모르는 상처가 숨어있다. 그건 독한 가난이기도 하고 독특한 고통일 수 있었다.

“전 교도관의 아들입니다. 전에는 간수라고 했죠,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나누어주는 건빵을 많이 얻어먹고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우리가 고척동 목욕탕 옆집에서 세를 얻어 살았는데 그 집에서 쫓겨나 어머니가 등에는 나를 업고 형의 손목을 쥐고 안양천 근방을 쫓방 얻으러 진종일 다니던 일입니다.”

성장배경을 솔직히 말할 수 있는 그는 확 열린 사람이었다.

“성장하면서 남다른 상처나 경험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고등학교 3학년 초 자율학습시간에 선생님에게 무지무지한 폭행을 당하고 자퇴했습니다. 저는 문제아도 아니었고 그냥 앞전한 보통의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는 편이었지요. 그런데 전날 마신 술기운이 빠지지 않은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다가

맞기만 했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한편이 되어 수사기관에 나를 반항적인 불량학생으로 모략하더군요. 나를 때린 선생님의 변명이 내가 전교 10등의 모범생인데 사랑으로 때린 거라고 했죠. 거짓이었어요. 그런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합의를 해주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해 수능을 못치르는 바람에 다시 공부를 해서 다음해 검정고시를 통해 연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런 환경과 경험이면 일찍 세상이 보였겠군요?”

나도 그와 비슷한 과정을 겪은 과거가 떠올라 물었다.

“대학 때 강의실에서 내려가다가 우연히

총학생회장때 수배 당했지만 나는 공산주의자 아닌 크리스천 41기 연수생·교수들 기부금 3억 모아 공익법률사무소 출범 믿음·소망·사랑이 신조, 사랑하며 나누며 사는 게 인권투쟁

제가 조는 걸 보고 트집 잡아서 시범적으로 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무지막지했죠. 몽둥이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까고 엮어진 나를 발로 차고 밟고 했죠. 너무 심하게 얻어맞아 병원에 실려 가서 급하게 적추수술까지 하고 6개월을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건 교육적인 의도로 때리는 처벌이 아니라 폭력이었죠. 분노한 아버지가 선생님을 고소했어요.”

의외의 얘기였다. 인격이 부족한 교사가 있다는 말만 들었었다. 그가 잠시 말을 끊고 생각하다가 계속했다.

“아버지가 고소를 하니까 학교와 우리집안이 묘한 적대관계가 됐죠. 학교 측은 아버지를 선생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 버리더라고요. 억울하게

특례 입학한 장애학생들을 봤습니다. 혼자 이동을 할 수도 없고 수업을 받기도 불가능했습니다. 인권동아리 학생들 여러 명이 휠체어를 들고 삼사층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야 하니까요. 결국 장애학생 입학은 시설과 여건은 마련하지 않은 채 생색만 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 2학년 때 상암동 판자촌 주민들이 ‘우리는 빈민인데 도와달라’고 우리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 그곳에 있던 판자촌을 철거하기 시작한 거죠. 철거현장을 가보게 됐습니다. 용역이란 이름의 강패들이 와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주민들은 판자촌 주변에 페타이어로 벽을 쌓아놓고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름을 뿌려놓고 용역들이 점령하면 불을

붙여 그 속에서 다 타 죽겠다고 결사항전의 태도를 취하고 있었죠. 저는 당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막노동을 하고 살면 되지 왜 그러냐’하고 의문을 가졌죠. 저는 과외를 하면서 생활비와 용돈을 편하게 벌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제대로 이해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그곳의 터전을 잃으면 당장 길거리 거지가 돼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거대책도 없었고 또 거기 살아야만 그들이 일할 수 있는 노동현장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저항하던 그 사람들이 구속되는 걸 보면서 안 됐다는 마음이 들더군요. 그 후에 번쩍거리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과 거기서 흘러나오는 환호성을 들으면 쓸쓸한 기분이 들더군요. 축구도 보러 가지 않았어요.”

이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그의 운명은 다른 길을 가게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그가 계속했다.

“대학시절은 교회에도 열심히 다니고 학생회 활동도 부지런히 했습니다. 등록금 인하운동을 벌이는데 플래카드도 만들고 대자보도 붙이고 그랬죠. 대학 3학년 때였어요. 총학생회장은 4학년이 하는 건데 총학생회장이 디스크로 입원하게 되자 뒤에서 그냥 도와주던 3학년인 저보고 전면에 나서라는 겁니다. 제 의지와는 다르게 연대와 고대의 노동절 연합시위에서 대표자가 되어 버렸고 그날 이후 저는 졸지에 수배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운명의 흐름이 바뀌어 버린 거죠.

사실 총학생회나 운동을 하는 학생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도 탐독하고 사상가적 성향을 가지고 있죠. 총학생회장도 NL계열과 노동운동을 중시하는 PD계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념적 사상적 지표가 없는 크리스천이었을 뿐입니다. 제 생각은 예

수같이 그냥 약자를 도와주자는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선배들처럼 사상서적을 읽지 않았습다. 총학생회장을 하니까 남들이 저보고 공산주의자냐고 하기도 했죠. 그때마다 저는 크리스천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세상을 지향하는 겁니까?”

“이념으로 갈라서서 서로 치고 받고 하는 데는 사랑이 없습니다. 부자들을 무조건 적대시하고 분노하는 건 또 다른 악마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진 자들이 나눌 줄 알고 함께 사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있다고 사회의 소수자나 약자를 사회악같이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는 문둥병자, 고아, 과

부, 맹인들을 고쳐줬고 위선과 부패가 가득한 세상에 대해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하고 평등의 수준을 높였으면 하는 겁니다. 사상을 가진 선배들은 저에게 실체가 없는 신에게 십일조를 바치는 걸 이해못하겠다고 했죠. 저는 어려운 이념 얘기나 정권투쟁보다는 사랑하면서 살면 인권투쟁이 절로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믿음, 소망, 사랑이 저의 신조라고 했습니다.”

“수배생활과 그 이후는 어떻게 살았죠?”
 “학교 안에 숨어 나가지 않고 일 년 간 버틴 후에 자수형식을 취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화운동을 하던 친구가 있는 청주로 내려가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총학생회장을 할 때부터 노동자들의 파업현장을 많이 찾아가했습니다. 붉은 띠를 머리에 두르고 허공을 향해 주먹질을 하는 걸 보면 섬뜩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소중하구나 하고 깨닫기도 했죠. 노점상들의 연합시위도 가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협조해 달라고 했죠. 현장에서 떡볶이들이 길바닥에 내팽개쳐지고 아주머니가 털석 바닥에 주저앉아서 영영 우는 걸 보면 이상한 거예요. 불법영업은 맞는데 불쌍하고 동정이 가는 겁니다.”

대학졸업 후에도 지방에서 시민사회운동을 계속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야학도 하고 평화운동, 교육운동을 했습니다. 지방에는 활동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제가 여러 분야 운동의 네트워크를 담당하기도 했죠.”

“그러다 고시공부를 했는데 왜 그랬죠?”
 “거리에서 데모도 많이 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청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과연 이렇게 한다고 세상이 바뀔까 하는 회의가 들더라고요. 매일 시위를 하고 서명운동을 해도 정책은 바뀌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게 정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도는 어떻게 해야 바뀌나를 살폈죠. 결국 법이 만들어져야 되더라고요.”

요. 모든 정치 행위의 결말은 법의 영역으로 현실화되는 걸 깨달았습니다. 차라리 법적으로 대변해 주고 입법정책에 반영되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결론을 내고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시 공부할 여건은 됐나요?”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하루라도 빨리 취직하길 원하셨어요. 아버지 박봉으로 형을 유학시키는데 제가 공부한다고 하니 기가 막힌 거죠. 집에 도움을 받을 처지가 못됐죠.”

헌책방에서 법서를 구입해 신림동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으니 학원을 가지 못했어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수험생들이 버리는 책들이 독서실 주변에 쌓여있었죠. 그걸 주워다가 읽었습니다. 사귀는 여자 친구가 피아노 레슨을 하면서 생활비에 도움을 줬어요.

밤도독질도 했어요. 새벽 6시쯤 고시생 식당으로 가면 일하는 아주머니가 없죠. 빈도시락 두 개를 가지고 가서 아침 발표한장을 내고는 점심 저녁밥과 반찬까지 도시락에 넣어가지고 나와 그걸 먹었죠. 더러는 아침에 근처 교회로 가서 새벽기도 하고 거기서 주는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공부를 하더라도 사회를 위해 그 지식을 쓰이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마흔 살까지 공부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원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일찍 합격을 시켜 주신 겁니다.”

학원에 가면 그곳에서 가르치는 것에만 집착하게 되는데 저는 이책 저책 주문 걸 읽어가니까 폭이 다양해졌던 것 같습니다. 한번은 제 여자 친구가 책을 줬을 걸 보고 눈물이 글썽해서 새 책을 여러 권 사주기도 했었죠.”

“사법연수원 생활은 어떻게 했죠?”
 “연수원에 가니까 이기주의가 팽배한 느낌이더라고요. 연수원은 자신들의 출세를 위한 곳인 것 같았어요. 조, 반, 자치회의 일들을 모두 공부 때문에 끼리는 것 같았어요. 대학 때부터 그런 데 익숙해서 그런지 일들이 모두 내게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안 한다



공익법률기금 조성에 앞장서준 연수원 동기들과 함께한 배 변호사(오른쪽에서 네 번째)

고 하면 남에게 떠넘기는 셈인데 그러긴 싫었습니다.”

다들 평가시험을 준비할 때 혼자 수학적 행을 준비하기도 했죠. 연수원 안에 인권법 학회와 신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가입한 사람들이 비교적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 모임들에서 공익을 전담하기를 원하는 연수생들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공익변호사가 되려고 해도 가서 일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는 합동법률사무소 공감 같은 곳에서는 더 이상 변호사를 뽑을 계획이 없다고 하고요. 공익변호사가 되려면 스스로 대출받아 그 일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스쿨 쪽에도 국민을 위한 변호사가 되겠다는 친구들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 무렵 ‘공익변호사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회의가 네 번 개최되고 그곳에 가서 현재 활동을 하는 기독교변호사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공익전담변호사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방안이 문제더라고요. 그걸 선배들이 해 줄 수 없다면 차라리 우리들이 직접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고 주중에 공익변호사를 하면 되겠다는 생

각을 하게 됐죠.”

“주말에 돈을 벌고 주중에 공익변호사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제 사촌누님이 신문배달을 하면서 목회 일을 하는데 신문배달일도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벌어서 작은 교회를 꾸려나가는 겁니다.”

변호사들도 신문배달이나 복대리 알바, 논술점식 알바 그런 걸로 돈을 벌어 공익활동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같은 연수생들과 교수들에게 그 취지를 얘기하고 기부를 약속해 달라고 하는 운동도 전개했죠. 강의실마다 기부약정서를 놓고 서명 받았죠. 기금을 내는 것도 공익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연수생들이 동참했고 교수님들도 기부를 하셨죠. 그렇게 해서 3억이 넘는 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남과 달랐다. 가장 이기적일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거금을 만드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 나는 시원시원하게 말이 나오는 그의 얼굴에서 장래 탄생할 새로운 지도자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 엄상의 공보이사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 활동 안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법률상담과 교육 등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직접 나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이나, 체계적인 법률교육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는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 상담 및 법률 교육 ◀◀

- ◆ 상담대상 : 북한을 벗어난 후 국내에 거주하는 자
- ◆ 상담내용 :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일반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률상담 (법률구조 포함)
- ◆ 교육대상 :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
- ◆ 교육내용 : 민·형사, 노동, 사회보장, 세금 등 일반 생활과 밀접한 각종 법률상식 등 교육

■ 문의 :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대한변협 인권과 전화: (02)2087-7733, 팩스: (02) 3477-4009 E-mail : humanrights@koreanbar.or.kr)

특별연수



이우재 부장판사

대한변협은 지난 7일 제101기 '재건축·재개발' 특별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특별연수에서 회원들의 높은 호응 속에 진행됐던 서울중앙지법 이우재 부장판사의 '재건축·재개발 관련 최근 판례의 동향'을 소개한다. 워낙 양이 방대했던 이 부장판사의 논문 중에서도 '재개발·재건축과정에서 현금청산의 법리' 부분만을 간추려 게재한다.

【편집자註】

도정법 제47조 및 표준정관 제44조의 현금청산의 법리

1. 총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는 현금청산 대상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를 현금청산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에 동의하고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원활한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이 규정은 구 도시재개발법 제36조를 계승한 것으로, 도정법이 그 적용범위를 재개발사업으로 제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적용되는 것인데, 강제가입제를 취하는 재개발사업에서는 조합원인지 여부는 전혀 문제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조합원으로서 신축물로서 현물분양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현금청산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로서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던 것이다.

반면에 재건축사업은 본래 임의가입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으로 임의 가입하고서도 현금청산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으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실물경제가 악화되고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현물분양을 받고 분양대금을 납부하기 보다 차라리 현금청산을 받아 정리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이 많아지면서 재건축사업에서도 이 규정을 둘러싼 분쟁이 엄청나게 늘었다.

그러나 도정법은 현금청산의 법률적 성격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조차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즉 ① 현금청산으로 조합원지위가 상실되는 것인지, ② 청산금액 역시 재건축사업에 있어서의 매도청구금액과 마찬가지로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금액인지 개발이익을 공제한 금액인지 여부, ③ 현금청산에 있어서도 '비례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

부, ④ 도정법상 사업시행자가 150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현금청산금 이외에 이자가 발생하는지와 이자율, 정송방법(민사소송, 공법상 당사자소송), ⑤ 현금청산자가 그 소유 토지, 건축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임의로 이전 내지 명도하지 않는 경우 정송방법(매도청구소송, 신탁등기소송, 청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등), ⑥ 청산금액의 평가 기준일 등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표준정관 제48조도 별도로 현금청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관련 판례

◆ 현금청산과 조합원지위 상실 여부

① 재건축 조합의 경우(대판 2010. 8. 19. 2009다81203):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

이러한 정관 규정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이후라도 조합원의 지위에서 이탈하여 현금청산을 받을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그 내용이 구 도시정비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재개발사업에서 청산금에 대한 협의불성립시의 절차: 수용(대판 2008. 3. 13. 2006두2954): 구 도시재개발법이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혹은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이하 이들을 '현금청산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와 동일하게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후 청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과는 달리(구 도시재개발법 제36조, 제31조제2항 각호, 제42조 참조), 도정법은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대상자

재건축·재개발 관련 최근 판례의 동향

-재개발·재건축과정에서 현금청산의 법리-

에 대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재개발법에서와 같은 규정이나 그들 사이에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한편으로 같은 법 제38조, 제40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도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도정법에서는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한 청산금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에 의해 그 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보상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도정법에 규정된 현금청산 사유 이외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현금청산을 받도록 규정한 정관의 효력(유효, 대판 2011. 7. 28. 2008다91364): 원고 조합의 정관 제45조는 제4항에서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다음, 제5항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60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4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 조합의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라도 위와 같이 정관에서 정한 분양계약 체결기간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수

에 대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재개발법에서와 같은 규정이나 그들 사이에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한편으로 같은 법 제38조, 제40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도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도정법에서는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한 청산금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에 의해 그 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보상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청산금 지급의무의 발생 시기(대판 2008. 10. 9. 2008다37780; 대판 2009. 9. 10. 2009다328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기간의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다.

◆ 협의불성립시 청산금의 산정방법(대판 2009. 9. 10. 2009다32850): 도시정비법시행령 제48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고,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청산금액을 협의하여 정할 경우의 평가방법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적절한 방법으로 청산금액을 평가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위 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청산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거쳐야 할 절차(대판 2011. 7. 28. 2008다91364):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그 소유의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구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쳐야 하며,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때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합치적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만일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의 토지 등 부동산 인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수용절차에 의할 때에는 부동산 인도에 앞서 청산금 등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일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의 토지 등 부동산 인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수용절차에 의할 때에는 부동산 인도에 앞서 청산금 등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사업시행상의 의의

분양신청을 전제로 분양대상자가 정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다.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와 부담시기,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는 모두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인데, 본조의 현금청산대상자는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본조의 현금청산은 결국 관리처분계획을 정하기 위한 필수과정이다. 본조의 현금청산의 성격을 규명함에 있어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충북변호사의 특별한 이야기



이태화 변호사

민심이 곧 천심이라 하였습니다. 민심이란 무엇이고 천심이란 무엇일까요?

민심이란 것이, 천심이란 것이 있기는 한 것일까요. 선거철이 되면 한번쯤 반추하여 보는 화두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4·11 총선에, 충북 지역에서는 4명의 법조인이 출사표를 던졌었습니다.

충북지역의 선거구가 8곳인 점에 비추어 보면 많은 수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 법조인은 신뢰와 선망의 대상인 동시에 시기와 경멸의 대상이라는 혼란스러운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큰 흐름 속에서 법조인은 경멸도 당하고, 비난도 당하며, 사악하고 부도덕한 존재로 매도되지만, 가족·마을·지역사회로 내려오면 상당한 신뢰와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법조인은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 언제나 누구나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존재였고 성실과 근면의 표

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가족이나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사법시험 합격을 커다란 영광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를 유지하고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것은 어차피 80%의 성실한 대중이고, 그와 같은 성실하고 모범적인 대중의 표상이 우등생으로 각인된 법조인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 법조인은 나름대로의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정치 입문을 강하게 권유받게 되고, 그것은 가족이나 문종의 차원 또는 그가 기반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욕망으로 대치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자의반 타의반

으로 많은 법조인들이 정치에 발을 들여 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라면 법조인의 정치참여는 비극 일리 없습니다. 정치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중들과의 소통과 상호의 세계이기 때문에, 정치인은 확실한 사명감은 물론 역사와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보고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높고 깊은 비전이 있어야만 하는 때문일 것입니다. 한 지역, 한 국가를 이끌어 갈 확실한 비전이 없는 정치인은 지역

주민의 애경사나 챙기는 사람 좋은 이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이라는 것이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개인적으론 정치적인 소양도 부족하지만, 도무지 한 사회를 이끌어 갈 비전을 제시할 자신이 없어 정치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민심, 천심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민심, 천심은 시대정신 또는 역사의식과 맞닿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중들 욕망의 최대 공약수가 민심일 수 있을 터이고, 어디론가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 역사의 방향이 천심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민중들의 욕구는 너무나 다양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역사를 창조하여 왔고 지금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역사와 시대정신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뇌한 수많은 깨어있는 사람들의 덕분이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의 선두에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치인에 대하여 그렇게 비난하고 불신하면서도 정치에서 초연할 수 없고, 정치의식이 필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충북 지역에서 출마한 4명의 법조인에 대한 선거결과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원인은 무수히 많이 있겠지요. 그럼에도 지극히 성실하고, 나름대로 지역민의 기대를 배경으로 출마한 법조인들의 성적표가 그리 좋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상당히 의아하고 실망스러운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개인의 고통이나 좌절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한 선택이 천심이었던 지에 대한 의문이 함께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고통과 실망을 넘어 “역사에는 승자와 패자가 공존하며, 성공과 실패사이의 간극이 그리 크지 않다”라는 사실을 명심한다면, 현실정치에 참여한 우리 동료 법조인들의 시도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그 분들의 아픈 좌절이 역사에 가치 있는 기여를 하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그마한 위안과 희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thlee8008@daum.net

민심, 천심 그리고 현실정치

하고, 그 최대 공약수라는 것도 지극히 막연합니다. 시대의 흐름이나 역사의 방향에 이르면 더욱 막막하기만 합니다.

예민한 일급 정치인은 시간과 공간의 작디작은 기미에서 천의를 읽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낀 작은 기미가 천의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후일에 결과만 남을 뿐입니다. 그것은 운명일까요? 아니면 능력일까요?

이쯤 되면 역사적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생각하는 숲



박수연 변호사

매일 아침 출근길이 가볍고 빨리 일이 하고 싶어 미치겠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고(故) 정주영 회장은 평생 소풍가는 마음으로 회사 가는 일을 즐겼다니 행복의 달인이라고 할 만하다.

헌데 우리 일반인들의 삶은 그와 많이 동떨어진 것 같다. 월요일 아침부터 페이스북에 가득한 ‘회사 가기 싫다’는 아우성들을 보니 말이다. 직장 초년기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이라도, 매달 다박다박 통장 잔고 불어나는 재미라도 있었건만 한해 두해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면서 느끼는 것은 피곤이요, 월급 빼곤 다 오른 물가에 월급은 들 어움과 동시에 흔적만 남긴 채 사라진다. 술 자리에서 상사 뒷담화를 통해 진정한 공감을 경험하는 우리가 마지막에 꼭 하는 한마디. “나중에 카페 하나 차려놓고 취미로 일 할래.”

그런 우리에게도 변화의 희망은 있다. 어느 생물학자의 말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 인 생은 이모작 시대가 될 거란다. 2020년 초 고령 사회가 되면 평균 수명이 80세를 훌쩍 넘어 바야흐로 인생 90의 시대가 된다. 50~60대 정년 이후에도 40년에 가까운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다.

그 기나긴 세월을 놓고 먹기엔 우리의 국민연금 은 너무 말랐고, 젊은 세대의 부양능 력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한마디로 정년 이후에도 자기 밥벌이는 자기가 해야 하는 제2의 인생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우울하기 그지없는 전망이지만 어차피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까짓것 인생 두 번 사는 기회라고 기 분 좋게 받아들일 수밖에. 첫 번째 인생은 멋모르고 휘둘리며 보냈다면, 두 번째 인생 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둘러보면 이미 인생을 두 번 살고 있는 사 람들도 꽤 많다. 미국 유명잡지 오프라 매거 진 ‘O’의 편집장 에이미 그로스는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냈다. 월간지 제작에 수십 년 을 몸담아 오면서 최고의 명성과 권력을 거 머진 그녀가 자진해서 그 모든 특권을 놓아 버린 것이다.

그리고는 그동안 취미로 해온 참선 수행 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새 직업으로 삼 았다. 45년간 월간지 제작 주기에 맞춰 살 다보니 일에 대한 흥분과 설렘을 잃어 서글 폼했다는 그녀는 순전히 즐거움을 위해 글을 읽을 수 있고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고 싶었노라고 말한다. 명상 연구가 로서 새 인생을 살면서도 베테랑 기자 출신 의 전문성을 활용해 명상 관련 저술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가까이 보자면 내 남편도 인생 이모작을 충실히 준비하는 사람 중 하나다. 낮엔 소심 한 직장인이지만 퇴근 후엔 집에 설치된 간



오프라 매거진 ‘O’의 전 편집장으로 현재는 참선수행을 연구, 가르치고 있는 에이미 그로스

데...’ 라며 접어버린 꿈을 주접스레 곱씹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다.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후 어떤 일을 하게 될지 확실하긴 어렵다.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 같다. 두 번째 인생을 어떻게 살지 미처 대비하지 못했다면 이리저리 부지런히 기웃거리야 한다. 생경한 전문서 적도 뒤적여보고, 전공 이외의 분야를 골라 대학원 등록도 해볼직하다. 그러다가 우연 찰게 수십 년간 잠자고 있던 놀라운 재능이 번쩍 눈을 뜨지 누가 알랴.

인생 이모작의 성공 기준은 보수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다. ‘자식들 때문에 오늘도 참는’ 일이 아니라 ‘내 멋에 겨워 하는’ 일 과 함께인지 여부다. 소풍가는 기분으로 출 근할 수 있는 일, 최소 임금만 받고도 기꺼 이 날밤을 새울 수 있는 일이 딱이다. 맨밤 에 김치만 먹더라도, 20평 아파트에 월세로 사는 한이 있어도 죽는 날까지 손에서 놓고 싶지 않은 그런 일, 죽기 전에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sypark@seoulbar.or.kr

인생 이모작

이 작업 부스에서 작곡에 몰두하는 예술가 다. 이미 30대 후반 나이에 디지털 싱클 몇 장이 주요 경력의 전부라면 직업 뮤지션으 로서의 꿈은 일찌감치 접어야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의 꿈은 아무지기도 빌보드 차 트에 오르는 것이라니 음악에 대한 진지함 만은 누구 못지않다. 취미로나 할 일에 저렇게 열을 올리는 모습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남편이 요즘엔 달리 보인다. 느리지만 끊임 없이 준비해 온 만큼 두 번째 인생을 나보다 훨씬 멋지게 살아갈 것 같아 사실 부럽다. 술이 좀 들어갔다 싶으면 ‘난 꿈이 있었는

새 법률을 소개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2. 1. 26. 일부개정 / 2012. 5. 1. 시행

- 따돌림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따돌림의 정의를 신설, 강제적인 심부름도 학교폭력의 정의에 추가하였다.
- 피해학생의 치료를 위한 요양비뿐만 아니라 심리상담·조언 및 일시보호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012. 3. 21. 일부개정 / 2012. 5. 1. 시행

- 기존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등

에 의한 학교폭력도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사이버 따돌림을 추가하였다.

-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학교 또는 교원에 대해서는 상훈을 수여하거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유형 중에 '전학권고'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 요청 7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였다.

-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내릴 것을 의무화하고, 협박 또는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병과하거나 가중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에 학부모가 동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기회를 피해학생까지 확대하였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3. 13. 일부개정 / 2012. 3. 13. 시행

-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협박하거나 보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도록 하는 등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2012. 3. 30. 전부개정 / 2012. 5. 1. 시행

-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의 정도 및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한다.

- 학교의 장은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등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이라도 우선조치로서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3. 30. 일부개정 / 2012. 4. 1. 시행

-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활동의 범위에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 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과 기숙사에서의 생활시간을 포함하였다.

-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전기 등의 안전점검, 소독·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 등을 수익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 학교안전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4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 3. 30. 일부개정 / 2012. 4. 1.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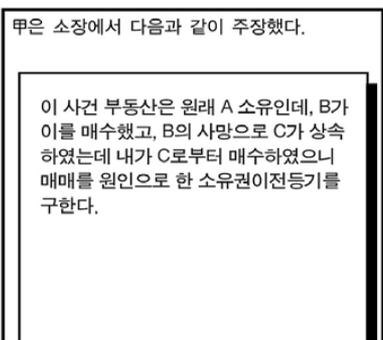
- 과실상계의 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으로 하고, 과실상계의 기준은 지급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되, 인지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신체적 결함이 있는 등의 원인으로 피공제자에게 과실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료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일시보호의 기간은 30일로 하되,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대한변협 신진우 사무차장

불능범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도632 판결



※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판례 정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판결요지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고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판례는 일관되게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사기는 불능범이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 판결도 그 하나의 예이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바로 불능범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위험성이 없어야 불능범이 되므로, 위험성 유무를 따져서 불능미수인지 불능범인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의견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하여 사실상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발생이 가능한 경우라고 해야 되고, 따라서 장애미수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총평

사기꾼들이 죽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뭔가 재미를 보기 때문일 텐데... 아무 재미를 볼 수 없다고 하는 이 판결은 소송사기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

글 : 오영근 한양대 로스쿨 원장 / 그림 : 이영욱 변호사

출처 : 만화 형법 판례 "형법총론"【법률저널】



양삼승 변호사의 法街散策

나는 어떤 법조인인가?

“나는 어떤 성향의 법조인인가?” 그리고 ‘왜, 어찌하여, 그런 성향의 법조인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은 더욱 원천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라는 철학적 질문의 법조인의 적용 형식이다. 그리고 또한 이 질문은 ‘법조인의 성향(性向) 유형과 그 결정요인’이라는 ‘총론적인 질문’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는 ‘각론적인 질문’에 해당한다.

법조인의 성향은 여러 기준에서 나누어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중요한 몇 가지 기준에 나를 맞추어 보고자 한다.

1974년 판사로 임관된 이래 40년 가까이 법조인으로 일해 오면서 나 자신을 돌이켜 보면,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계약서 등의 해석도 포함하여)에 있어서 형식적 문언(文言) 해석보다는 그 입법취지까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듯하다. 물론 엄격해석이 요구되는 형사법의 경우는 다르겠지만, 특히 행정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그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미 200년도 훨씬 넘는 과거에 만들어진 미국헌법이 아직도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만 법률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

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나는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권익’이 충돌되는 경우에, 전시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보호에 더 비중을 두는 성향이다. 물론 국가주의의 입장에서 먼저 국가가 잘 되어야 국민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역사의 흐름은 법치와 인권옹호 쪽으로 흐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나는 검찰·경찰 등 형사사법 권력의 권력남용 가능성을 극단적으로 우려하는 편이다. 특히 이러한 권력이 정치권력과 결합 내지는 야합하여 이루어 질 수 있는 반(反)법치주의적 상황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를 뒤집어 말한다면, 법치와 인권의 수호를 존재 이유로 삼는 사법부가 우유부단, 비겁, 무사안일 등으로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비판적이다. 그리하여 시대

의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고, 변화에 추종하고 편승하는 사법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왜 이와 같은 성향을 가지게 되었는가? 여기에서 떠오르는 말이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절실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나에게도 분명히 가슴에 오랫동안 남는, 따라서 성향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에 틀림없는 몇 가지 경험이 있었다.

첫 번째 경험은, 아직 정식 법조인이 되기 전인 1973년 사법연수생 시절에 있었던 소위 국가배상법위헌판결에서 위헌의견을 낸

8개월 동안 외부기관 파견생활을 한 것이다. 당시 국가의 비상상황이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목도된 ‘사법부 옥죄이기’의 모습은, 30대 초반의 풋내기 법관인 나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이에 덧붙여, 앞서 본 트라우마적인 경험 말고도 긍정적인 면에서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것들도 있었다.

우선 판사생활 3년 만인 1977년 독일정부의 초청으로 1년 반 동안 독일의 법원과 대학을 보고 들은 것은 행운이었다. 부끄러운 지난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재발 방지의 다짐은 교훈적이었다. 나아가 판사생활 20여 년이 지난 중견법관으로서 1995년 미국 법조계를 둘러본 것은, 나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주었다. ‘자유’의 공기를 마음껏 흡입하는 것이 법률가로서의 생각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이 나날이 그 사랑을 상실해 가는 삭막한 과정으로 될 수도 있고, 이는 내가 택한 직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그 이전 1990년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에서 연구부장으로 지낸 경험과 어우러져서, 헌법적 감각에 눈뜨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인생은 우연과 필연의 절묘한 조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데,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오늘의 나의 모습은 필연이다.

경험은 성격을 만들고, 성격은 운명을 만든다. ssyang@hwawoo.com

왜 그렇게 되었는가?

9명의 대법관 전원에게 대한 퇴출조치였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1980년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에 대한 판결에서 내란목적살인임을 부정한 6명의 대법관에 대한 퇴출조치를 보게 되었다. 이는 정치권력 그리고 여기에 영합한 일부 법조인에 의한 사법부 ‘저격’ 및 ‘확인사살’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이었다.

두 번째 경험은, 판사로서는 특이한 경험으로서 1981년 재판업무를 떠나 국보위에서의 4개월 및 입법회의에서의 4개월 함께

지방네트워크 부산회



김외숙 변호사

지난 가을 학기, 동아대학교 로스쿨에서 2년차 학생들에게 ‘법문서 작성’ 과목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다. 학생들은 연령대에서, 학부전공이나 사회경력에서 넓은 스펙트럼을 보였다. 그들이 가진 다양한 이력이 훗날 법조인이 되었을 때 풍부한 자산이 되어 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였고 부럽기도 했다. 하지만 그 부러움도 잠시, 학생들과 가까워질수록 곧 현실적인 걱정과 염려가 내게도 몰려들었다. 법조계의 현실과 이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고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며 어떤 법률가가 되어야 할 것인지는 이들에게 절박하고 당면한 고민거리였다. 법문서 작성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였다.

그러던 참에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생겼다. 공익변호사 그룹인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와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가 로스쿨

초청으로 학생들을 만나러 온 것이다. ‘공감’과 ‘어필’은 모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변호사 모임이다. 남다르게 사는 두 변호사의 생생한 이야기는 법조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와 보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다. 학생들에게는 불투명한 미래를 비춰주는 한줄기 빛처럼 반갑고 가슴 설레게 하는 메시지였음이 분명하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 나는 학생들에게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가 기획하고 진행 중인 공익소송을 소개했다.

당시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소속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죄의 대가로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부인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정작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도 행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로만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그 경계선을 어디에 그릴 것인지는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우리는 국내외를 망라하여 모든 규정과 지침, 관련된 결정과 판례를 검색하고 분석하였다.

우리의 공익소송, 무모하지만 위대한 도전

변호사들은 복역 중이거나 만기 출소한 원고들을 대리하여 국가를 상대로 과밀수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었다. 인권의 사각지대로 사회적 시선을 불러오기 위해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가 기획한 일련의 소송들 중 하나인데 새우잠, 칼잠을 잘 수밖에 없도록 사람을 밀어 넣는 행형현실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학과공부만으로도 정신없이 바쁜 학생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게 공익소송에 봉사를 자원해 왔고, 이렇게 하여 변호사들과 로스쿨 학생들은 힘을 합쳐 공익소송 진행에 한층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또한 과밀수용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정신적, 신체적 영향을 밝히기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결과, 개별 연구자들의 많은 논문들도 검토하였다.

변호사들과 로스쿨 학생들은 한 달에 한 번꼴로 부산지방변호사회관에 모여 소송 진행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서로 과제를 분담해 왔다. 변호사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분량의 과제들도 학생들이 분담해 준 덕분에 빠르게 소화할 수 있었다. 특히 미국판례를 찾아 관련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부분을 발췌, 번역하는 일에서

는 학생들의 활약이 아주 컸고 지금은 어렵게 찾아낸 독일 판례들의 번역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우리는 과제 결과물을 다음카페 ‘피구급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모임’에 올려 같이 공유하고 코멘트를 주고받는다. 이 비공개 인터넷 카페는 학생들이 공익소송에 결합하게 되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방법으로 간사인 윤재철 변호사가 특별히 시간을 들여 개설하였다.

법원에 제출하거나 도착된 서류들도 카페지기 윤 변호사가 그때그때 스캔해서 올려 주어 변호사들과 학생들이 재판기록을 공유하고 있다. 물론 소송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었고 학생들은 비밀 준수 서약서를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학생들은 그동안 검색하고 검토한 자료들을 토대로 조별로 토의하고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연습도 하였다. 앞으로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학생들은 법정 참관을 하며 법원의 재판진행과 변호사의 변론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윤 변호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무모하지만 위대한 소송이라 하였다. 비록 미약해 보일지라도 후일 대한민국 인권역사에 길이 남을 도전이라는 뜻일 게다. 이에 더하여 나는 또 하나의 의미를 본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가 미래의 법조인들에게 인권옹호라는 법조인 본래의 사명을 심어주고 공익변호사로서의 전망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busandike@yahoo.co.kr

KBA Legal Aid Foundation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소외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법률구조 신청대상자

- 1 경제적 약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2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 국제법상 난민
- 3 북한이탈주민 4 성폭력피해자 5 한부모가정
- 6 재단이 구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 7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가 특별히 구조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자

법률구조 신청



법률구조 대상사건

민사, 형사, 가사, 헌법소원 등 재단이 법률적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건 단, 개인 간의 분쟁 사건은 지원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구조 비용

법률구조가 결정되면 재단은 신청인을 대신하여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을 일부 대체지급 해 드립니다.

※ 법률구조사건이 종료되면 대체 지급한 소송비용은 법률구조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등에 따라 상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단, 승소가액이 500만원이하의 사건, 패소한 사건, 형사사건은 소송비용을 돌려받지 않습니다.

* 자세한 법률구조신청 안내는 재단 홈페이지 참조(www.legalaid.or.kr)

법률구조 기부안내

여러분이 내밀어준 손을 잡고 벼랑 끝에 선 이가 안전한 세상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해 준 한마디 위로가 이웃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기부하시면 억울함에 울고 있는 이웃의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부 소중하게 바르게 쓰일 것입니다. 재단 홈페이지의 “재단 알림이”를 통해 재단 사업 및 예산의 투명성을 매주 알려드립니다.(www.legalaid.or.kr)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이며, 2010년부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대한 기부는 변호사법상의 변호사공익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기부 방법: 일회 기부 및 정기 기부 가능하며, 재단 홈페이지(www.legalaid.or.kr)의 기부금 약정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 계좌: 신한은행 140-007-031299
- 기부에 관한 문의는
전화: 02-3476-6511 팩스: 02-3476-6512 이메일: euna@koreanbar.or.kr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9-4 양진빌딩 305호
 전화 : 02-3476-6515, 02-3476-6511 | 팩스 : 02-3476-6512
 홈페이지 : www.legalaid.or.kr

